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9차보건복지위원회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일본식 용어 정비>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2279호)

2024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1. 일본식 용어 정비	2

I . 개요

1. 정부안(의안번호 제2279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정부
- (2) 제 안 일 : 2024. 7. 26.
- (3) 회 부 일 : 2024. 7. 29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본식 용어인 “야채”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“채소”로 고치려는 것임.

II. 검토의견

1. 일본식 용어 정비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“야채”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“채소”로 고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가목)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위생용품”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가. ----- -----
1) <u>야채</u> ,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(製劑)	1) <u>채소</u> ----- -----
2) (생략)	2) (현행과 같음)
나. ~ 라. (생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※ 시행일: 공포한 날	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는 “위생용품”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,

가목의 세척제로서, 1) 야채,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(製劑), 2)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,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,¹⁾

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“야채”를 우리말 표현인 “채소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²⁾에 따르면, “야채”를 “채소”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, 개정안은 법제처의 용어 정비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법률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언어생활, 법률 용어의 용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바,

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‘야채’에 대하여 “들에서 자라나는 나물이며, ‘채소’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”로 정의하고 있고, ‘채소’에 대하여는 “밭에서 기르는 농작물”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, ② 고(故) 박갑수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는 ‘야채’에

1)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생용품”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.

가.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1) 야채,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(製劑)

2)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,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

2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열번재판 증보판 [부록] 정비 권고 용어 44p.

대하여 조선 이전부터 써 오던 말인데 마침 일본에서도 쓰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³⁾을 피력한 점을 고려할 때 “야채”가 일본식 용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바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493

3) 국립국어원 「새국어생활 제25권 제4호」(2015년 겨울) ‘공감과 실효를 위한 국어교육, 그리고 한국어의 세계화’